

보도일시 (인터넷) 2025. 4. 22.(화) 11:00,
(지면) 2025. 4. 23.(수) 조간

배포 2025. 4. 22.(화) 06:00

어선 임시검사 대상 명확하게 개선한다

- 기존 불명확·불필요한 임시검사 수검 대상 개선하여 어업인 불편 해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선 임시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8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각호)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한편, 불필요한 임시검사 대상을 삭제하였다.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기관, 조타장치 등 특정한 설비나 장비 등을 수리 하면 해양수산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어선을 항행이나 조업에 이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어선 임시검사에 대한 일부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어선주와 검사 당국, 단속 기관 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고, 어선주의 조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 어선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소유 어선에 대한 수리 등이 임시검사 대상인지 어선주가 일일이 단속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없어져,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감소하고 어업인은 마음 놓고 조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필요한 임시검사 수검비용 경감 등 어업인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 어업인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사항 등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태호 (044-200-5550)
	어선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서지원 (044-200-5551)

참고

변화하는 「어선법 시행규칙」

항목	내용	주요 구체화 내용
1호	선체 주요부 변경	■ '깊이 변경', '주요부 설치·교체'로 의미 명확화
2호	추진기관 등 변경	■ 기존의 포괄적 기준을 출력 기준(30마력, 5킬로와트) 및 설치 유형(내연기관, 동력전달장치, 프로펠러축, 발전기)에 따라 세분화
3호	조타장치 변경	■ '조종성에 영향' 문구 삭제로 간결화 ■ '타 또는 조타장치의 설치·교체'로 구체화
4호	전선로 변경	■ 연료탱크 등 인화성 고압가스 위험이 있는 곳에 전선로를 <u>새로 설치</u>하거나 <u>교체</u>하는 경우로 구체화
7호	어선용품의 고정설치 또는 변경 (단, 길이 24m 미만 어선은 하역설비, 구명소방설비, 항해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시)	■ 어선용품(하역설비, 구명·소방설비, 항해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시 ■ 길이 24m 미만 어선의 예외조항 삭제
9호	복원성 영향	■ 법령 및 별표 근거로 복원성 기준 적용 및 면제 대상을 구분해 명확화
13호	해양사고 관련 변경	■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라는 포괄적 표현 삭제 ■ 제1~3호 범위 내 변경·신설·교체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